

※ 진흥회 소식 ※

'97년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지원안내

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용요령 제8조에 의거 1997년도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997. 6. 2

한국전기공업진흥회장

1. '97년도 지원규모 : 30억원

2. 용자대상

- 가. 중전기기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공통 애로 기술 및 요소 기술 개발사업
- 나. 중전기기 산업등 관련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큰 선도적 첨단산업기술 개발사업
- 다. 기타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용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3. 용자조건

- 가. 용자금리 : 연 5%
- 나. 용자기간 : 5년(2년거치 3년 분할상환)
- 다. 용자비율 : 소요자금의 100%
- 라. 과제당한도액 : 3억원 이내

4. 용자취급은행 : 한미은행

5. 용자신청기간 : 1997. 6. 16 ~ 6. 28(2주간)

6.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

한국전기공업진흥회 진흥부 진흥과
서울·서초구 반포동 51-5 대경빌딩 9층
TEL : (02)3476-0271/4 FAX : (02)3476-0275

한국전기공업진흥회 공고 제 1997-3호

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16조 제10항 및 수출입별도 공고(1997. 2. 28, 통상산업부 고시 제 1997-34호)에 의하여 한국전기공업진흥회의 장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 중고 전기기기에 대한 수입승인 요령을 다음과 공고한다.

1997. 4. 11

한국전기공업진흥회장

중고 전기기기 수입 업무처리 요령 공고

제 1 조(목적) 이 업무처리 요령은 중고전 기기기의 수입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 이 업무처리 요령은 (별 표 1)에 계기된 품목의 수입물품에 적용한다.

제 3 조(승인신청 대상자)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

제 4 조(승인업무 담당기관) 한국전기공업진흥회(서울 서초구 반포동 51-5 대경빌딩 9층)

제 5 조(승인신청 서류) 이 요령에 의하여 수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의한 수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전기공업진흥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수입승인 신청서 3부
2.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 계약서 1부 (무상기증의 경우 당해사실 입증서류)
3.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
4. 수입대행 계약서 1부(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.)
5. 리스계약서 1부(리스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.)
6. 카달로그 또는 기타 증빙서류(성능보장서등)

제 6 조(승인기준등) 본 요령에 의한 승인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1. 실수요자가 제조업체일 경우
2. 안전상 문제가 없을 경우
3. 국내 전압 및 규격등에 적합할 경우
4.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

5.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용 목적으로
수입할 경우

제 7 조(수입승인 사항의 변경승인) ① 대
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 및 대외무역법
관리규정 제3-2-1조, 제3-2-3조, 제
3-2-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승인의 변
경승인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

1. 수량
2. 가격
3. 승인의 유효기간
4. 당사자에 관한 사항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신청
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전기공업진흥회의
장에게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한 수입승
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(당초의 승인서에
직접 수정을 할 수 있는 경우 승인서)와
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기발급된 수입승인서 2부
2. 변경승인 사유서 1부
3.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
4. 신규 수입승인 신청서 3부(당초 승인
서에 수정을 할 수 없을 경우)

제 8 조(수입승인 사항의 변경신고) ① 대
외무역관리 규정 제3-2-2조 내지 제3
-2-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승인의 변경
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.

1. 원산지
2. 규격
3. 수입물품의 용도(수입용도가 지정된 경
우에 한함)

4. 승인조건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승인 변경신
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전기공업진흥
회의 장에게 대외무역관리 규정에 의한 수
입승인사항 변경신고서와 다음 각호의 서
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서 1부
2. offer sheet 1부
3. 변경신고 사유서 1부

제 9 조(수입승인의 처리기간) 수입의 처리
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.
다만, 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
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10 조(사후관리) ① 수입을 얻는 자는
대외무역 관리규정 3-5-2조의 규정에
의하여 승인의 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
록 다음 서류를 한국전기공업진흥회의 장
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수입신고필증 1부
2. 실수요자의 물품인도 증빙서 1부
3. 제품이동 사유서(실수요자가 부득이한
사유로 타사에 양도한 경우)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승인의 이
행사항을 확인한 한국전기공업진흥회의
장은 이 요령 및 관계법령의 위반사실이
발견된 경우 이를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보
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 11 조(수수료) 이 요령에 의하여 수입승
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수입금액의
USD 1당 0.4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]

한다.

터 시행한다.

제 12 조(기타) 이 요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-34호('97. 2. 28) 및 진흥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2. (경과조치) 이 요령시행 이전의 수출입별도 공고 제1장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승인 받은 품목은 이 지정요령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수입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.

부 칙

3. (폐지규정) 한국전기공업진흥회 공고 제'96-1호('96 1. 4) 중고 전기기기 수입추천 요령은 이를 폐지한다.

1. (시행령) 이 요령은 1997년 4월 11일부

(별표 1)

승 인 대 상 품 목

1. HS 제85류 전기로 및 전기용접기의 것

품목번호(HS 번호)	품 목	비 고
8514. 10	저항가열식의 노와오븐	
8514. 20	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노와오븐	
8515. 2	금속의 저항용접용기기	
8515. 21	전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의 것	
8515. 3	금속의 아크 또는 플자즈마 아크용접기	
8515. 31	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의 것	

2. 기계류, 부품, 소재 국산개발 대상품목 또는 공업기반기술 개발대상품목중 개발을 위한 견본